

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

인하공업전문대학(이하 ‘대학’ 이라 한다)과 산업체명 기재 (이하 ‘산업체’ 라 한다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(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)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 목적

이 협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

- 위탁교육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.
- 모집단위별 위탁생은 다음과 같다.

학 년 도	성 명	생 년 월 일	지 원 학 과
2023년도			

제3조 위탁생의 자격

고등학교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

-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서 일괄 추천한다.
-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-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5조 교육과정의 편성

- 본 협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 산업체의 시설이용

산업체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, 사용 방법 등을 작성하고 약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

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 교육비 및 등록

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당해 학과의 등록금과 동일하며,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한다.

제9조 위탁생의 신분

본 협약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, 대학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0조 위탁생 제적처리 기준

- 매학기 시작 전월 위탁교육생의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4대 보험 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
-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가 입학 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 의무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
- 산업체 퇴직 시 제적 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
가.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
나.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,
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※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.

제11조 보칙

본 협약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년 월 일

대 학 명 : 인 하 공 업 전 문 대 학

회 사 명 :

총 장 : 서 태 범 (직인)

대 표 :

(직인)